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 발표

- 최대 20%까지 탈락시킬수 있는 강력한 유급제도 시행
- 성적 절대평가 폐지 및 모든과목 상대평가 실시
- 상대평가시 학점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배분비율 설정
- 재학년한 최대 5년이후 자동 제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지난 11월 30일(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졸업생의 질적수준 관리를 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적정수준 보장을 위해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금번 논의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2월 1일(수) 발표하였다.

(2) 금번 학사관리 강화방안은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자질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만을 엄선하여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 동 방안은 ‘강력한 유급제도 실시’, ‘엄격한 성적평가 시행’ 등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내실있는 교육역량에 집중하였다.

(3) 우선 유급제도가 없는 학부과정과 달리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사경고 및 유급제도를 마련하고, 학사관리가 엄격한 의과대학보다 강화된 전체 정원대비 최대 20%까지 유급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 통산 2회 유급 또는 3회 학사경고 시에는 제적으로 처리함
- ※ 주요 의과대학 유급율은 5% 내외이며, 가장 높은 경우도 10% 수준임

(4) 엄정한 성적평가 및 경쟁을 통한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든 과목 평가는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수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 단,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기초과목(법조윤리, 실무실습, 모의재판, 법문서작성, 법률정보의조사)등 의 경우에는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음.

(5) 다음으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엄격한 학점 배분비율을 공통으로 적용하여 성적인플레이가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적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 ※ **학점 배분비율** : A+ : 7%, A0 : 8%, A- : 10%, B+ : 15%, B0 : 20%, B- : 15%, C+ : 9%, C0 : 7%, C- : 5%, D : 4%

(6)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고 유급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재학년한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적처리 되도록 정하였다(단, 휴학기간은 제외함).

(7) 동 학사관리 강화기준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마련한 것으로,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자질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한 방침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금번 방안은 다음 학기부터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시행할 계획이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동 방안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행의 담보를 위해 행·재정 지원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 아울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별로는 금번 학사관리 강화방안 이외에도 졸업시험 실시, 졸업논문 심사 등의 체도를 두어 자율적으로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